

항 고 장

사 건 2019형제31774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 고 인(고발인)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공동대표 한상희, 진영종, 백미순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김하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

3.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

항고인(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 흥 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서초동, 일신빌딩)
전화 02-2038-3620, 팩스 02-2038-3621

피항고인(피의자)

[검찰]

1. 김진태(전 검찰총장)
2. 임정혁(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3. 엄희준(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4. 최재경(전 인천지방법검찰청장)

5. 김희종(전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6. 주영환(전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장)

[미래부 전파관리소]

7. 정경희(전 중앙전파관리소장)

8. 이성봉(전 서울전파관리소장)

9. 권은정(전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1과장)

10. 성명불상자들(2014. 6.-7. 전파관리소 소속 직원들)

[구 국군기무사령부]

11. 김대열(전 구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12. 이승환(전 구 국군기무사령부 처장)

13. 권재대(전 구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운영과장)

14. 이상연(전 구 국군기무사령부 210부대 강화반장)

15. 성명불상자들(전 구 국군기무사령부 210부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들로 기동탐방기 시험운용 당시 불법감청 실행자들)

항고인(고발인)들은 피의자(피고발인)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774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원두 검사의 2024. 5. 24.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인(고발인)들의 대리인은 2024. 5. 27. 불기소이유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위법임이 분명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그 예외도 분명하게 정해 뒀습니다. 전파관리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전파법 제49조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수사목적으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정원두 검사는 2014. 6. 국군기무사령부가 검찰(대검찰청)에 국군기무사령부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도피중인 유병언 검거와 관련한 방안을 전달하였고(참고자료8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2014. 6. 17.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이 대검차장에게 전달하였고 기재하고 있음), 이를 전달받은 다음날 2014. 6. 18. 대검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를 상대로 금수원 주변 무전기 통신내용 확인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이를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측은 그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금수원 주변에서 전파스펙트럼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무전내용 확인에 들어간 것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2014. 6. 18. 대검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에 보냈던 공문에는 “금수원 및 그 부근”에서 금수원측이 사용하는 “간이무선국(무전기) 상호간의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2014. 6. 18.부터 피의자 유병언 등 검거시까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이런 공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의자 엄희준이 전파관리소측에 ‘전화’로 협의할 때에는 무선통신내용이 아니라 “금수원 내 불법무전기 사용 여부와 그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검찰이 요청한 것은 금수원 내 불법무전기 사용 여부와 그 위치 확인이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원두 검사 역시 2014. 6. 18. 대검 공문상 기재된 “무선통신내용”을 “유병언 등 검거시까지” “확인”달라고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분

명하다는 점을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검 공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무전기 사용 여부와 그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공문의 내용과 다른 전화상 설명이 있었다는 피의자 엄희준의 변명에 따라 기무사 문건(참고자료8)에 따르면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함께 실행한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 검찰 지휘라인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불기소할 것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석연치 않은 변명을 근거로 혐의없음 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검 공문에서는 수사목적으로 그 대상자, 대상지를 특정하였고, 그 내용도 ‘금수원’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상호간의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유병언 등 검거 시까지” 확인해달라는 점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불법 무전설비 사용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협조 의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문언을 돌려서 이해해보려고 해도 대검 공문의 기재를 정원두 검사가 언급한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문의 내용을 ‘마사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해보고자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불법 무전설비 사용여부 확인”으로 이해했다고 강변하는 초유의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또, 검찰총장 이하 어떤 검사도 무선통신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달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인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이 불법무전기 사용 여부와 그 위치 확인이 필요한데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작성했다는 변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벗기 위해 대검찰청이 스스로 무지했다고 강변하는 꼴이라 씁쓸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실시간 확인한다는 것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아는 상식인데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고 받

부된 허가서에 따라 집행업무를 하는 검사들의 집단인 대검찰청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그 자체로 거짓말이라 봐도 무방하고 설사 거짓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렇게 이례적인 무지함을 보이는 검사의 변명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봄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불기소이유를 보니, 2014. 5.-7.경 13회에 걸쳐 법원에 통신제한조치(감청)허가를 청구에 모두 발부받았고 전파관리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 전 일주일 내에 3건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였다고 하고 금수원 주변에 감청장비 30대를 직접 설치하여 감청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니 이미 검찰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미 감청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감청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혹은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관리소측에 공문을 보내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무선통신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으면 되고, 이 감청허가서 집행과정에서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은 충분히 지득할 수 있고, 이를 수사상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전파관리소측에 이례적인 공문을 보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검찰이 감청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측에 공문을 보내 “실시간 무선통신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 사건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엄희준의 변명도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법 무전설비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대체 이런 걸 왜 전파관리소에 요청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공교롭게도 기무사측이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한 방안을 전달한 다음날 바로 이 공문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전파관리소의 업무와 관련해 협조요청을 한 것이

라는 모양새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전파관리소 관련자들에 대한 면죄부까지 쥐어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전파관리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상 해서는 안되는 전파감시를 했다고 하면 그 여파는 검찰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으니 이와 같은 변명과 그에 따른 논리를 구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적으로나 실체상으로도 궁색해 보일 뿐입니다).

한편, 전파관리소의 전파감시와 관련해서, 대검이 불법 무전설비 사용 여부를 하필이면 금수원 주변에 국한해서, 피의자 유병언 등 검거시까지만 전파관리소측에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검의 요청은 피의자 유병언 등에 대한 수사 목적임이 분명하고 대검 스스로 이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관의 존재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어디를 봐도 전파관리소는 “수사 목적”으로 전파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를 하필이면 금수원 및 그 부근에서, 금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만, 유병언 등 검거시까지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변명인지 검찰 스스로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무사가 유병언 수사를 왜 합니까. 기무사가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차장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기무사가 감청한 내용을 수사상 활용했다고 하는데 대체 검찰이 이런 내용을 정말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또, 기무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한두번도 아닌데 매번 깃털처럼 가벼운 처분만 받으니 기무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서 항고에 대한 판단을 받기 전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역사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 검찰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법리를 적용하였음을 수궁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통지
1. 항고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2024. 5. 28.

항고인(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 공

담당변호사 양 홍 석

서울고등검찰청

귀중